


의정활동보고서



제216회 정례회(2007. 6. 20. ~ 6. 2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활발한 의정활
동을 펼친 결과, 조례안을 비롯한 98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47건의 각종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요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0건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에도 수시로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챙기고, 직접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도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제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한층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토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여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여 한 톨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예산안 등 안전심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경선 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우리 모두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북부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에게 조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풍수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집중호우 및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함께 모아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힘찬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초석이 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2
1. 소 집	12
2. 회 기	12
3. 활 동	13
가. 본회의	13
나. 위원회	14
III. 의안 처리	21
1. 본회의	21
2. 위원회	22
IV. 민원 처리	24
1. 청 원	24
2. 진 정	24
가. 접 수	24
나. 처 리	25

V. 본회의 보고사항 26

1. 의안 접수사항 26

2. 조례 공포 사항 27

3. 위원회 활동사항 27

4. 기타 의정활동사항 28

VI. 5분 자유발언 31

부 록

□ 조례안..... 37

1.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3.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안..... 117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동의안 126

1.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2.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3.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허가 동의안

□ 건의안 139

1.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 기타안 145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는 2007년 6월 2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2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6월 20일(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남종식 의원), 제2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 2007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다.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6월 29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 혁신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결산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 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11호(2007년 6월 7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6월 20일(수) 11 : 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6월 20일 ~ 6월 29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 (누계 27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15회 까지	215	14	33	30	34	28	25	35	16
216회	22	1	4	3	2	4	2	2	4
누 계	237	15	37	33	36	32	27	37	20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6. 20.(수) 11 : 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남종식 의원(농수산) 2.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6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검사 결과 보고 4.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원안가결
2007. 6. 29.(금) 11 : 00 (제2차)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6.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7.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8.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6. 29.(금) 11 : 00 (제2차)	9.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연장 허가 동의안 10.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0.(수) 13 : 00 (제1차)	1.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안 심사 2.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0.(수) 13 : 00 (제1차)	1.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기획조정본부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6. 21.(목) 11 : 00 (제2차)	1.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6. 22.(금) 11 : 00 (제3차)	1. 경제과학진흥본부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7. 6. 27.(수)	1. 현지확인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0.(수) 14 : 00 (제1차)	1.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원안가결

개회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1.(목) 11 : 00 (제2차)	1.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감사관실 ○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행정지원국 소관(자연환경연수원 포함) 3.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 보 원안가결
2007. 6. 22.(금) 11 : 00 (제3차)	1.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도립경도대학 ○ 보건복지여성국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립경도대학 ○ 보건복지여성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1.(목) 11 : 00 (제1차)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교육청 소관) 2. 2007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3. 200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교육청 소관) 4.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1.(금) 11 : 00 (제2차)	1.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환경해양 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0.(수) 15 : 00 (제1차)	1.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2007. 6. 21.(목) 11 : 00 (제2차)	1. 농수산국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2007. 6. 22.(금) 11 : 00 (제3차)	1. 농업기술원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7. 6. 28.(목) 17 : 00 (제4차)	1.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원안가결

〈통상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0.(수) 13 : 00 (제1차)	1. 투자통상본부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2007. 6. 21.(목) 11 : 00 (제2차)	1.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 허가 동의안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5. 21.(목) 10 : 30 (제1차)	1.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5. 22.(금) 10 : 30 (제2차)	1. 소방본부 소관 ○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5.(월) 10 : 30 (제2차)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관리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소관) ○ 토론·의결 2.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총괄 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행정지원국, 경도대학, 건설도시방재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경제과학진흥본부, 소방본부, 기획조정본부	원안가결
2007. 6. 26.(화) 10 : 30 (제3차)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질의·답변 - 환경해양산업국, 보건환경연구, 의회사무처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투자통상본부 ○ 토론, 의결(도청소관)	원안가결

개회의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6. 27.(수) 10 : 30 (제4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교육정책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소관) 2.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본부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기획조정본부, 새경북기획단, 경도대학, 공보 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지원국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관광국	
2007. 6. 28.(목) 10 : 30 (제5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 질의·답변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도시 방재국,의회사무처, 경제과학진흥본부, 농수 산국, 농업기술원,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 토론·의결 5.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 토론·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7 (110)	17 (110)	16 (88)	1 (22)				
조 례 안	소 계	6 (66)	6 (66)	6 (51)	(15)				
	의 회 제 안	3 (18)	3 (18)	3 (14)	(4)				
	도지사 제 출	3 (35)	3 (35)	3 (28)	(7)				
	교육감 제 출	(13)	(13)	(9)	(4)				
예산 · 결산		4 (12)	4 (12)	3 (5)	1 (7)				
동의 · 승인		3 (12)	3 (12)	3 (12)					
건 의 안		1 (4)	1 (4)	1 (4)					
결 의 안		(6)	(6)	(6)					
기 타 안		3 (10)	3 (10)	3 (10)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8 (116)	17 (110)	6 (66)	4 (12)	3 (12)	1 (4)	(6)	3 (10)	(4)		1 (2)
의 회 운 영	1 (14)	1 (13)	(6)		(1)		(3)	1 (3)	(1)		
기 획 경 제	1 (19)	1 (17)	1 (14)		(2)	(1)			(1)		(1)
행 정 보건복지	3 (20)	2 (19)	1 (15)		1 (4)						1 (1)
교 육 환 경	1 (21)	1 (20)	(16)		1 (4)				(1)		
농수산	2 (5)	2 (5)	1 (2)			1 (2)	(1)				
통 상 문 화	1 (6)	1 (5)	(1)		1 (1)	(1)	(2)		(1)		
건 설 소 방	3 (11)	3 (11)	3 (11)								
특 별	4 (12)	4 (12)		4 (12)							
본회의	2 (8)	2 (8)	(1)					2 (7)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상임위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4건>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③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 ④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2건>

-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②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 원 회	계	행 정	사 회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3 (20)	1 (2)	2 (3)	(3)	(5)	(1)		(4)	(2)	
의 회 운 영	1 (1)	1 (1)								
기 획 경 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1)	(1)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2 (4)		2 (2)	(1)				(1)		
건 설 소 방	(5)				(5)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20)	3 (20)				
의회운영	1 (1)	1 (1)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2)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4)	2 (4)				
건설소방	(5)	(5)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7. 6. 8.)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6. 11.)
경상북도교육감 (2007. 6. 8.)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환경위원회 (2007. 6. 11.)
경상북도교육감 (2007. 6. 8.)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연장허가 동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2007. 6. 12.)
경상북도지사 (2007. 6. 13.)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 (2007. 6. 13.)

2. 조례 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비 고
2007. 5. 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2007. 6. 14.
2007. 5. 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2007. 6. 14.
2007. 5. 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007. 6. 14.
2007. 5. 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6. 14.
2007. 5. 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7. 6. 14.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행정보건복지	2007. 5. 23.	도청강당	경상북도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농 수 산	2007. 6. 9. ~ 6. 10.(2일간)	봉화, 안동, 청송	- 우박피해지역 현지 확인 - 농민위로 및 피해농가 지원 대책 협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7. 6. 14. ~ 6. 15.(2일간)	예천, 울진, 영덕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예천생태공원 조성현장 - 울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현장 - 영덕교육청 신청사 건립현장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제1회 경상북도 고용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7. 5. 21.(월) 15 : 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최윤희 통상문화 부위원장

○ 도청이전 성공추진을 위한 MOU체결

- 일 시 : 2007. 5. 22.(화) 14 : 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5. 25.(금) 14 : 0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36회 전국소년체전 개막식

- 일 시 : 2007. 5. 26.(토) 10 : 00
- 장 소 : 김천 종합운동장
- 참 석 : 백영학 의원, 한혜련 의원

○ POSCO 파이넥스 공장 준공식

- 일 시 : 2007. 5. 30.(수) 11 : 00
- 장 소 : 포항제철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포항 나노기술 집적센터 개소식

- 일 시 : 2007. 5. 30.(수) 13 : 30
- 장 소 : 포항공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바다의 날 행사

- 일 시 : 2007. 5. 31.(목) 10 : 00
- 장 소 : 영일만 신항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도농상생 한마당 잔치

- 일 시 : 2007. 6. 1.(금) 10 : 00
- 장 소 : EXCO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도의원

○ 한미FTA 대응 《어촌 신활력 포럼》

- 일 시 : 2007. 6. 5.(화) 15 : 00

- 장 소 :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 농촌일손 돕기

- 일 시 : 2007. 6. 12.(화) 11 : 00
- 장 소 : 영천 신령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7. 6. 12.(화) 15 : 00
- 장 소 : 강원도 의회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도청이정추진위원회 2차회의

- 일 시 : 2007. 6. 15.(금) 15 : 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개소식

- 일 시 : 2007. 6. 18.(월) 15 : 00
- 장 소 : 노인간호센터 전정(성주군 가천면)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7년 6월 20일(수) 제216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남종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남종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금번 216회 정례회를 통해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난 6월 8일 저녁때 경북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우박폭탄의 실상과 참상을 거듭 되새기고, 관계기관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우박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농업 회생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박폭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정도가 심하며, 발생지역이 또한 광범위하고 피해정도가 우심하여 태풍 ‘매미, 루사’ 때보다 더한 사상 최악의 농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박피해는 다른 재해와는 달리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피해 농산물의 상품성이 상실되어 사후 관리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가별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금년도 생계유지 및 내년도 영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재해복구 및 지원자격이 강화되고 지원대상 농가 및 지원액이 감소되므로 농약대, 인건비, 씨앗값, 농지임대료 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아주 미미한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해지원 기준은 별첨2번과 같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FTA타결 등과 함께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극히 악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죄를 소급하여 감옥에 보낸 적도 있었고, 민주화의 공로로 인정해서 법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을 준 적도 있듯이 전례가 많이 있음을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법을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인 것을 향후 국비 20%를 더하여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10%로 조정하여 모든 농민이 보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의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산정기준 및 방법에 있어 피해농민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박피해 농작물 처리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농심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교육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교육관계자들은 피해농업인들이 2학기 학자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협심해서 농업인 자녀들의 2학기 학자금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애타는 농심을 보았습니다. 절규하는 농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새댁이 저를 보는 순간, 높은 양반이 오셨는데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굶어죽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농업인들이 금번 우박피해로 인하여 제발 좀 먹고 살자라는 소중한 바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때 우리 농업인들과 힘을 합해 우리 농업인 피해농업인들이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37

1.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3.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안..... 117

1.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동의안 126

1.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2.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3.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허가 동의안

□ 건의안 139

1.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 기타안 145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 6건

☐ 조례안

-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7.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
11.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12. 그 밖의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 혁신도시 업무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3.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4. 경상북도의원, 김천시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한 자
5. 기타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인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전 기관의 임직원 및 노조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육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 보육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인
2. 보호자 대표 3인
3. 보육교사 대표 2인
4. 보육시설의 장 3인
5. 장애보육, 농어촌보육 관련 공익 대표 2인
6. 도의회 추천 자 1인
7. 소속공무원 1인

③도지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4. 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제반비용의 책정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위탁 및 실시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직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직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도청 및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 3 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법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전문연구 및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영아 및 장애아, 농어촌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보육시설 기초조사,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등
보육종합정보 망의 구축 및 홍보
9.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유기적 연계
10.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자격, 직무)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
한다.

2.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
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제13조에 의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원, 영양사 등을 채용할 경우에도 보육전문요원의 채용과 같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보육에 관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기타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도의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호의 위원은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호자의 대표
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4.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5. 소속 공무원

④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주민참여)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국 ·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 ·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도지사는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 · 공립 시설의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 · 공립보육시설은 도시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 · 공립보육시설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아 전담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장애아 통합보육기관 지정을 우선하여야 한다.

④도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에 관한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유휴시설의 활용)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료 및 제반비용) 도지사는 보육료 및 제반비용 등을 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시행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영유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4.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모·부가 장애인인 자의 영유아

5.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입양된 영유아
7. 모·부가 외국인인 자의 영유아
8.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9. 기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영유아

제5장 비 용

제21조(비용의 부담) ①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체교사 지원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7. 모·부가 외국인인 가정의 영유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영유아 건강검진비, 장애 영유아의 진단 및 판정비
9. 농어촌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아 전담교사 근무 수당
10. 그 밖의 부모교육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도지사가 보육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취약보육 시설
2.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 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보조조건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 6 장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24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육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사 수급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 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립시기 및 절차) ①도지사는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계획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육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육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수립 6개월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보육계획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기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 및 설치된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및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수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개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지원시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어업인 등이 경상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경상북도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경상북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 가. 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5.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6.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농어촌”이라 함은 제6호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촌과 어촌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는 관할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의 역할) 농어업인은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교육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수산업 지원시책의 기본방침) 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며, 농어업 미래를 개척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통해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지역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계승하며, 편리함을 갖춘 활력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6.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2 장 분야별 지원대책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①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신성장동력기반 구축사업
2. 농어촌 투자유치 및 농외소득 증대사업
3. 벤처농어업 육성사업
4. 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사업
5.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 지원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7.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어업 기계화 촉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9.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구조개선 사업
10. 농어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11.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2. 농어업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13. 그 밖에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①도는 미래를 개척할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민 사관학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어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쟁력있는 농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추가지원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확대사업
5.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 확대사업
6. 수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원의 상실 등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①도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2. 농작업 및 어로작업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의 일부
4.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농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6.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수산물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①도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농어촌유치원의 유아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농어업에 종사할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5.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농어촌 지역개발) ①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도시적 편리함을 갖춘 활력있는 복합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고려한 기반시설 구축과 농어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
2.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3.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농어촌 농어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5. 농어촌 경관보전 사업
6.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 ①도는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외소득원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외소득 증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촉진사업
4. 향토산업 육성사업
5. 기업형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거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 사업
6. 농어업 관련 민간·기관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농수산물 소비촉진) ①도는 농수산물의 유통기능 확충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개척 등 판매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명품 육성 지원
2. 농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3. 학교급식 식재료 등 우수 농수산물 공급 지원

4.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제17조(사업신청) ①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등이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 결정) 시장·군수 또는 농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교부) ①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장·군수를 경유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사후관리 등)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
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 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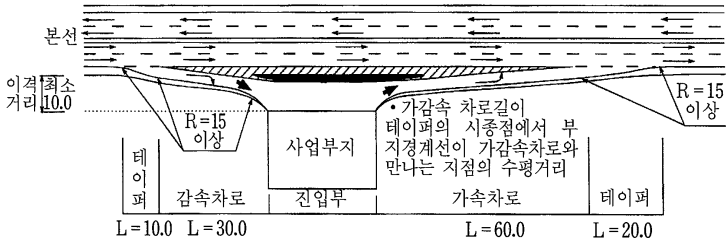
도면명	작 성 요 령
위치명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단면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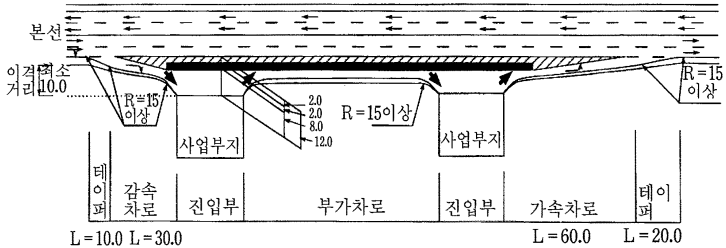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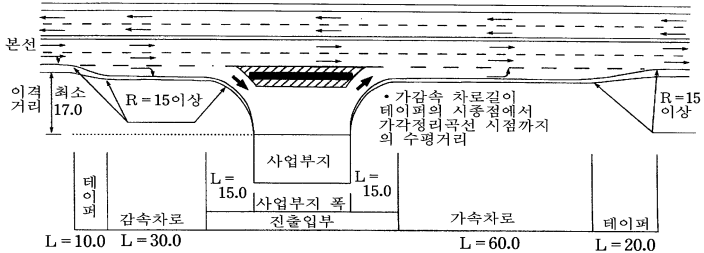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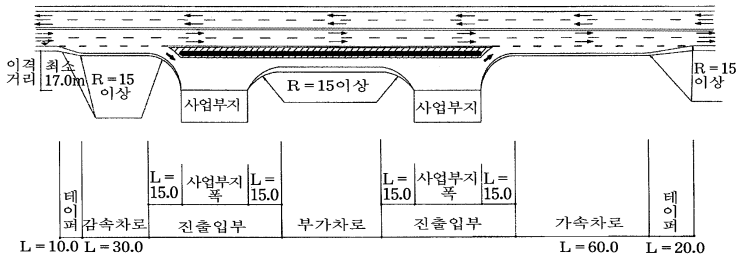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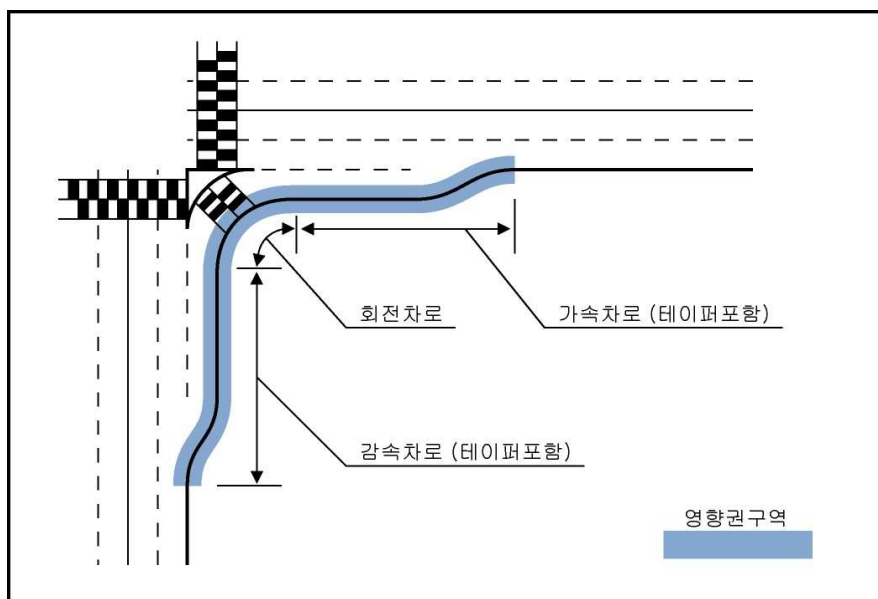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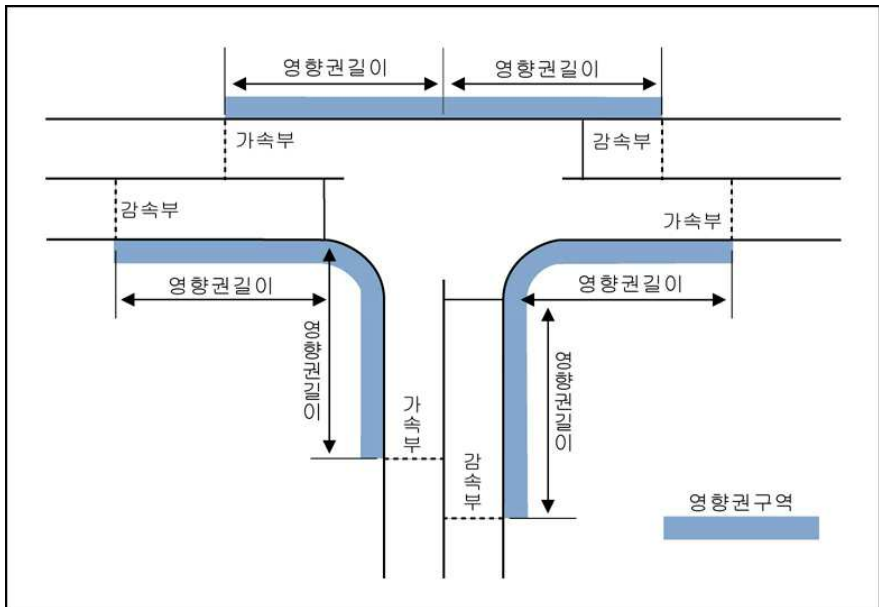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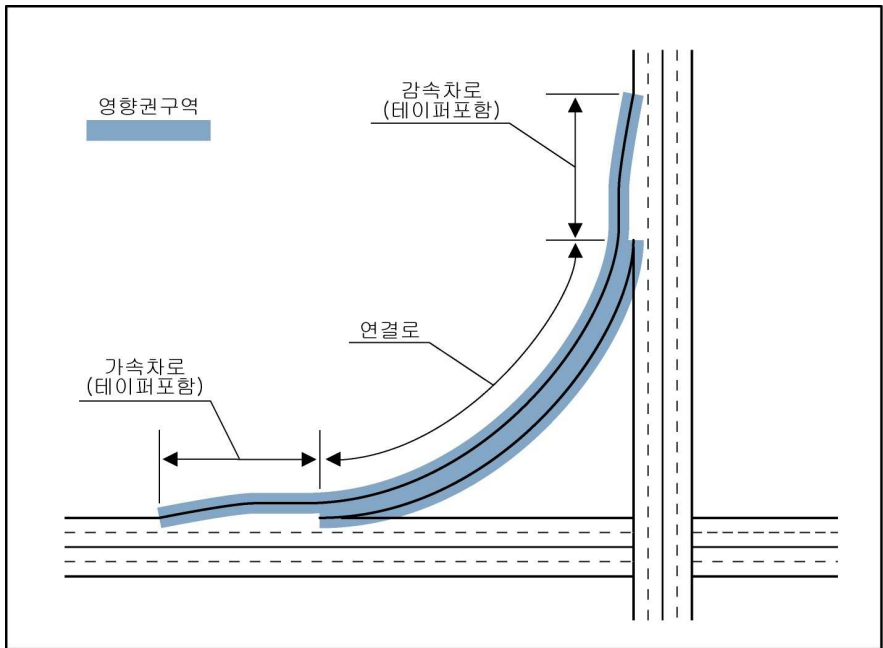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 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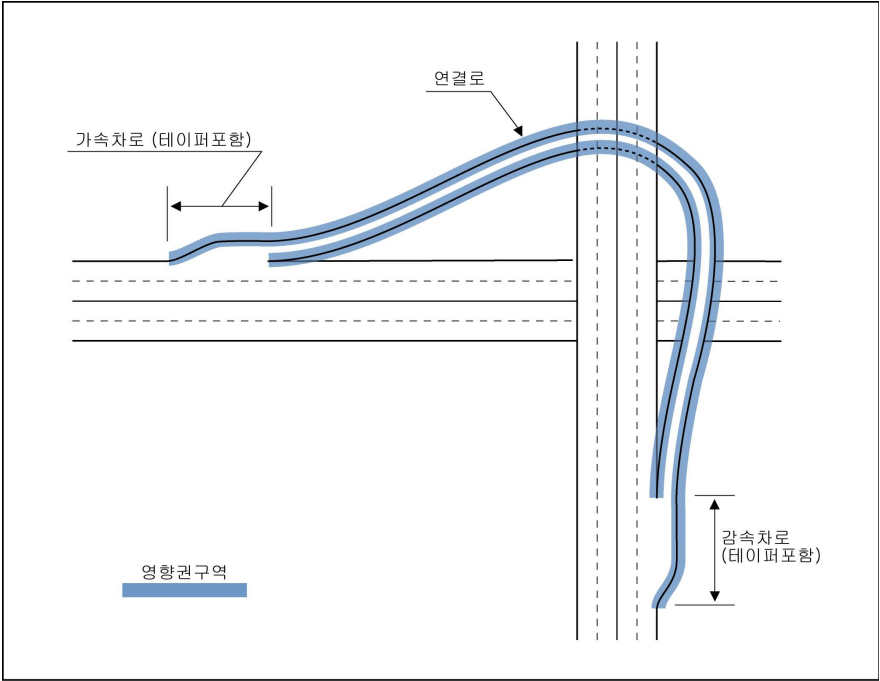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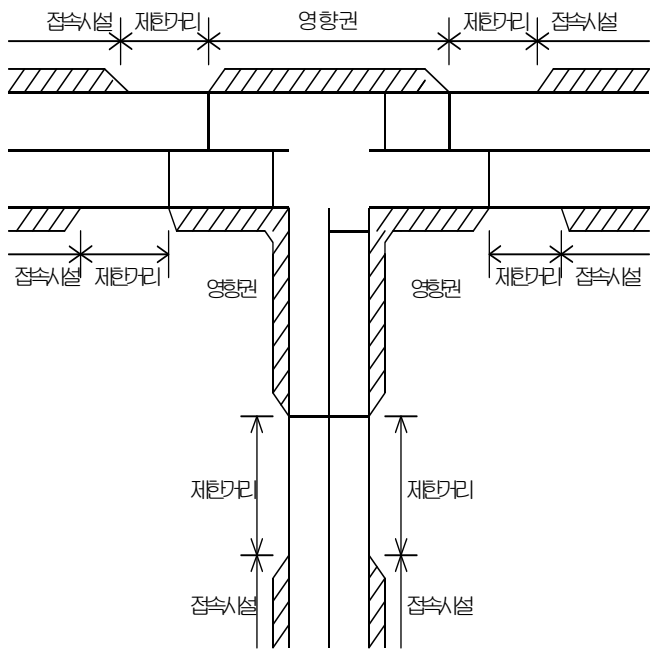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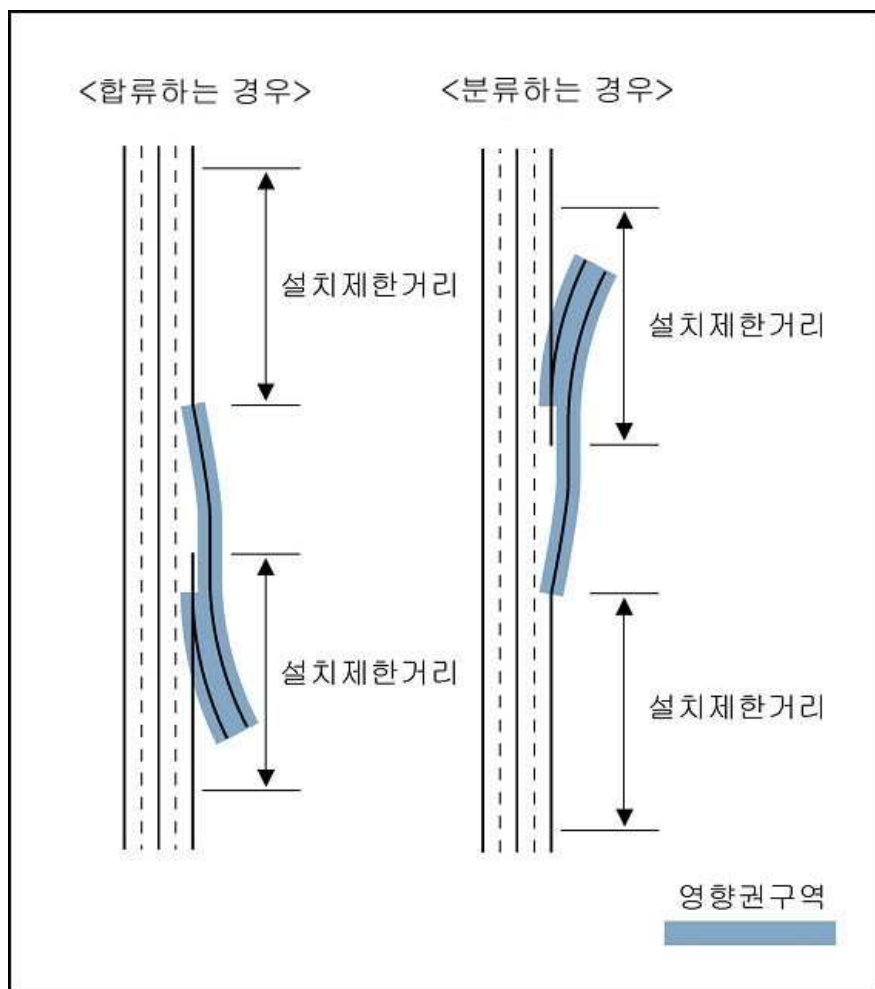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 ~ 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 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 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 ~ 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 주)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8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앞 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결지점				
⑦사용목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30300-33011민 '99. 7. 21. 승인				210mm×297mm 문용지 54g/m ² (재활용품)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 용 료 산정기준표(2007년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60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90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2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5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25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750
		지름3.0m 초과			5,250
	지 중 정 착 장 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5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90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3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8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2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35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600
		지름3.0m 초과			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2,5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기 타			15,0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2008년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9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3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7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4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69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3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37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72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58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300
		지름3.0m 초과			6,02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3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51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03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54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06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58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84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6,430
		지름3.0m 초과			9,01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1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7,22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4,3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1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4,440
		기 타			17,22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1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유통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2009년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78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6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9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8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8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16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54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93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91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860				
		지름3.0m 초과			6,8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6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57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16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74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33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91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33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260				
		지름3.0m 초과			10,18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2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9,46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6,21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2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8,920			
기 타			19,46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2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2010년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 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9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3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3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 타				20,7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3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2011년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지름0.1m 이하
				지름0.1m 초과 0.2m 이하
				지름0.2m 초과 0.4m 이하
				지름0.4m 초과 0.6m 이하
				지름0.6m 초과 0.8m 이하
				지름0.8m 초과 1.0m 이하
				지름1.0m 초과 2.0m 이하
				지름2.0m 초과 3.0m 이하
				지름3.0m 초과
				200
	지 중 정 착 장 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400
				850
				1,250
				1,650
				2,050
				3,100
				5,200
				7,250
				300
				600
				1,250
				1,850
				2,500
				3,100
				4,600
				7,750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기 타	표시면적 1㎡	1년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 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기타의 용도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기 타		
				140
				41,400
				20,7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4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광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2012년 1월 1일 이후 적용)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면적 1㎡	1년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 력구, 통산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지름0.1m 이하
				지름0.1m 초과 0.2m 이하
				지름0.2m 초과 0.4m 이하
				지름0.4m 초과 0.6m 이하
				지름0.6m 초과 0.8m 이하
				지름0.8m 초과 1.0m 이하
				지름1.0m 초과 2.0m 이하
				지름2.0m 초과 3.0m 이하
				지름3.0m 초과
				2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400
				850
				1,250
				1,650
				2,050
				3,100
				5,200
				7,250
				300
				6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표시면적 1㎡	1일	150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기타의 용도		5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41,400
		기 타		20,70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여성대에는 대장, 부대장 1명, 총무부, 홍보부, 구호부 및 약간의 고문을 둔다.

1.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둔다.
2. 홍보부에는 예방반, 홍보반을 둔다.
3. 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을 둔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소방

서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중 “시·군지역”을 “시·군·소방서”로 하고, 제3항중 “시·군”를 “시·군·소방서”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시·군”를 “시·군·소방서”로 하고, 제2항중 “시·군”를 “시·군·소방서”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여성대의 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 보 부	예 방 반	1. 대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1.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2.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 호 부	구 급 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응급조치
	구 호 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가료조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조직) ① (생략) ②여성대에는 대장, 부대장 1명, 홍보부, 구호부를 둔다. 1. <u>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둔다.</u> 2. <u>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을 둔다.</u> ③ (생략)	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여성대에는 대장, 부대장 1명, 총무부, 홍보부, 구호부 및 약간의 고문을 둔다. 1. <u>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둔다.</u> 2. <u>홍보부에는 예방반, 홍보반을 둔다.</u> 3. <u>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을 둔다.</u> ③ (현행과 같음)	여성대 부(部) 신설(의소대와 형평성 유지)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도연합회 구성은 시·군지역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시·군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대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 ----- ----- ----- ----- 다만,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군·소방서----- ③시·군·소방서----- -----	1개 시·군 2개 소방서의 소방서별 연합회 구성 근거 마련 및 관련조항 정비 (운영 효율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도는 도연합회와 <u>시·군</u>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u>시·군</u>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연합회 경비지원)①----- <u>시·군·소방서</u>----- ----- -----. ②-----<u>시·군·소방서</u>----- ----- ----- -----.	

예산·결산안 : 4건

☐ 예산·결산안

-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 결산

○ 총 괄(관 별)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장	관				
	계	3,110,619,000,000	96,724,005,580	3,207,343,005,580	3,416,213,749,975
	지방세수입	698,000,000,000	-	698,000,000,000	869,517,403,713
	지 방 세	698,000,000,000	-	698,000,000,000	869,517,403,713
	세외수입	144,198,072,000	96,724,005,580	240,922,077,580	259,251,386,362
	결상적세외수입	24,112,070,000	-	24,112,070,000	29,277,684,304
	임시적세외수입	120,086,002,000	96,724,005,580	216,810,007,580	229,973,702,058
	지방교부세	617,363,606,000	-	617,363,606,000	630,909,530,000
	지방교부세	617,363,606,000	-	617,363,606,000	630,909,530,000
	보 조 금	1,580,057,322,000	-	1,580,057,322,000	1,585,535,429,900
	국고보조금	1,580,057,322,000	-	1,580,057,322,000	1,585,535,429,900
	지방채 및 예치금	71,000,000,000	-	71,000,000,000	71,000,000,000
	국내차입금	71,000,000,000	-	71,000,000,000	71,000,000,000

(단위 : 원)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가)	과오납반환액 (나)	실제수납액 (가)-(나)		결손처분	다 음 년 도 이 월 액
3,361,774,107,298	5,040,756,197	3,356,733,351,101	59,480,398,874	6,856,681,880	52,623,716,994
816,120,338,867	5,039,471,497	811,080,867,370	58,436,536,343	6,828,229,440	51,608,306,903
816,120,338,867	5,039,471,497	811,080,867,370	58,436,536,343	6,828,229,440	51,608,306,903
258,208,808,531	1,284,700	258,207,523,831	1,043,862,531	28,452,440	1,015,410,091
29,216,630,464	8,340	29,216,622,124	61,062,180	347,250	60,714,930
228,992,178,067	1,276,360	228,990,901,707	982,800,351	28,105,190	954,659,161
630,909,530,000	-	630,909,530,000	-	-	-
630,909,530,000	-	630,909,530,000	-	-	-
1,585,535,429,900	-	1,585,535,429,900	-	-	-
1,585,535,429,900	-	1,585,535,429,900	-	-	-
71,000,000,000	-	71,000,000,000	-	-	-
71,000,000,000	-	71,000,000,000	-	-	-

나. 세출 결산

○ 총 괄(관 별)

과 목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증감(나)						예산현액(다) (가)+(나)
장	관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사 용 액	이 용	전 용	이 체	수 입 대 체 경 비	
	합 계	3,110,619,000,000	96,724,005,580	-	-	-	-	-	3,219,011,505,580
	일반운영비	352,368,201,000	851,240,000	4,810,838,000	-	-	-	-	358,030,279,000
	입법및선거관리	17,201,542,000	13,740,000	4,363,838,000	-	-	-	-	21,579,120,000
	일반행정비	335,166,659,000	837,500,000	447,000,000	-	-	-	-	336,451,159,000
	사회개발비	1,296,113,927,000	11,778,251,580	5,000,000	-	-	-	-	1,307,897,178,580
	교육및문화비	229,269,041,000	793,950,000	-	-	-	-	-	230,062,991,000
	보건및생활환경	293,727,922,000	5,638,000,000	5,000,000	-	-	-	-	299,370,922,000
	사회보장비	517,858,758,000	1,893,825,000	-	-	-	-	-	519,752,583,000
	주택및지역사회	255,258,206,000	3,452,476,580	-	-	-	-	-	258,710,682,580
	경제개발비	1,020,305,205,000	77,815,732,480	6,325,477,000	-	-	-	-	1,104,446,414,480
	농수산개발비	482,445,902,000	5,067,610,890	1,295,780,000	-	-	-	-	488,799,292,890
	지역경제개발비	121,858,785,000	1,134,734,000	-	-	-	-	-	122,993,519,000
	국토자원보존개발	395,247,593,000	71,623,387,590	5,029,697,000	-	-	-	-	471,900,677,590
	교통관리비	20,752,925,000	-	-	-	-	-	-	20,752,925,000
	민방위비	158,510,333,000	6,278,781,520	527,185,000	-	-	-	-	165,316,299,520
	민방위관리비	24,757,795,000	-	527,185,000	-	-	-	-	25,284,980,000
	소방관리비	133,752,538,000	6,278,781,520	-	-	-	-	-	140,031,319,520
	지원 및 기타경비	283,321,334,000	-	△11,668,500,000	-	-	-	-	283,321,334,000
	지방채상환	30,067,402,000	-	-	-	-	-	-	30,067,402,000
	제지출금	1,548,834,000	-	-	-	-	-	-	1,548,834,000
	교부금	221,420,410,000	-	-	-	-	-	-	221,420,410,000
	예비비	30,284,688,000	-	△11,668,500,000	-	-	-	-	30,284,688,000

(단위 : 원)

지출원인 행위액(라)	지출액 (마)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다)-(마)-(바)
		계(바)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171,439,364,220	3,092,367,055,410	79,072,308,810	34,698,899,670	44,373,409,140	-	35,903,641,360
352,228,549,430	349,953,733,430	2,274,816,000	2,029,566,000	245,250,000	-	5,615,066,570
21,197,716,320	21,197,716,320	-	-	-	-	381,403,680
331,030,833,110	328,756,017,110	2,274,816,000	2,029,566,000	245,250,000	-	5,233,662,890
1,303,023,952,190	1,296,415,648,660	6,608,303,530	830,000,000	5,778,303,530	-	5,059,889,390
226,632,912,400	226,048,343,200	584,569,200	500,000,000	84,569,200	-	3,616,741,600
299,009,357,600	297,948,845,490	1,060,512,110	330,000,000	730,512,110	-	361,564,400
518,832,062,710	517,570,462,710	1,261,600,000	-	1,261,600,000	-	920,520,290
258,549,619,480	254,847,997,260	3,701,622,220	-	3,701,622,220	-	161,063,100
1,099,201,978,910	1,034,403,050,610	64,798,928,300	27,835,155,470	36,963,772,830	-	5,244,435,570
485,970,697,970	479,328,771,290	6,641,926,680	4,356,755,000	2,285,171,680	-	2,828,594,920
122,019,761,950	119,835,731,950	2,184,030,000	700,000,000	1,484,030,000	-	973,757,050
470,473,522,610	414,500,550,990	55,972,971,620	22,778,400,470	33,194,571,150	-	1,427,154,980
20,737,996,380	20,737,996,380	-	-	-	-	14,928,620
164,080,308,590	158,690,047,610	5,390,260,980	4,004,178,200	1,386,082,780	-	1,235,990,930
25,215,612,790	25,215,612,790	-	-	-	-	69,367,210
138,864,695,800	133,474,434,820	5,390,260,980	4,004,178,200	1,386,082,780	-	1,166,623,720
252,904,575,100	252,904,575,100	-	-	-	-	18,748,258,900
29,949,992,380	29,949,992,380	-	-	-	-	117,409,620
1,535,534,680	1,535,534,680	-	-	-	-	13,299,320
221,419,048,040	221,419,048,040	-	-	-	-	1,361,960
-	-	-	-	-	-	18,616,188,000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1-1. 세입·세출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결 산 액(A)	2,422,981,807,290	2,233,115,306,320	189,866,500,970	
예 산 액(B)	2,247,805,000,000	2,247,805,000,000	0	
예산 현액(C)	2,394,612,934,000	2,394,612,934,000	0	
증 감 액(A-B)	175,176,807,290	-14,689,693,680	189,866,500,970	
증 감 액(A-C)	28,368,873,290	-161,497,627,680	189,866,500,970	

1-2.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b+c+d+e)	이 월 액 내 역 (b)				국고보조 금잔액 (c)	순세계 잉여금 (d)	지방채 상환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89,866,500,970	105,130,599,090	43,227,434,000	61,903,165,090	0	0	84,735,901,880	0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의결내용)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 기)	조 정 내 역		
			당 초	조 정	감 액
계	5건				△1,060,000
82	경제과학진흥본부	교통연수원운영비 지원	200,000	160,000	△40,000
174	행정지원국	전국자원봉사자관리자대회개최	100,000	60,000	△40,000
174	행정지원국	제5회 자원봉사자 대축제	50,000	0	△50,000
185	자연환경연수원	본관리모델링	1,043,000	1,013,000	△30,000
374	투자통상본부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동부지소건립	1,900,000	1,000,000	△9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 기)	조 정 내 역		
			당 초	조 정	감 액
계	4건				1,060,000
138	보건복지여성국	지체장애인협회경북협회사무실임차료	40,000	80,000	40,000
333	농업기술원	소득작목시범사업(과수주산지역결실안정사업)	600,000	960,000	360,000
신설	자연환경연수원	종합계 획수립 용역비	0	30,000	30,000
신설	보건복지여성국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0	140,000	140,000
		예비비			490,000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1. 세입예산

(단위 : %, 천원)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구성비			증감률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77,224,676	80.2	1,843,116,305	34,108,371	1.9
	국고지원금	33,610,364	1.4	32,718,954	891,410	2.7
	소 계	1,910,835,040	81.7	1,875,835,259	34,999,781	1.9
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91,525,906	8.2	191,525,906	0	0.0
	비법정전입금	1,860,000	0.1	0	1,860,000	100.0
	소 계	193,385,906	8.3	191,525,906	1,860,000	1.0
자체수입	재산수입	7,181,762	0.3	2,980,858	4,200,904	140.9
	입학금및수업료	26,668,272	1.1	26,643,365	24,907	0.1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12,931	0.0	212,931	0	0.0
	잡수입	11,194,687	0.5	10,447,162	747,525	7.2
	이월금	84,729,759	3.6	35,000,000	49,729,759	142.1
	소 계	129,987,411	5.6	75,284,316	54,703,095	72.7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96,972,000	4.1	25,888,000	71,084,000	274.6
	소 계	96,972,000	4.1	25,888,000	71,084,000	274.6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주민(기관등)부담금	1,435,208	0.1	952,069	483,139	50.8
	기타지원금	7,401,435	0.3	0	7,401,435	100.0
	소 계	8,836,643	0.4	952,069	7,884,574	828.2
세 입 합 계		2,340,017,000	100.0	2,169,485,550	170,531,450	7.9

2. 세출예산

(단위 : %, 천원)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장	관					
학교교육	유치원	48,801,064	2.1	46,698,727	2,102,337	4.5
	초등학교	237,641,645	10.2	193,926,980	43,714,665	22.5
	중학교	214,619,036	9.2	194,336,638	20,282,398	10.4
	고등학교	288,755,416	12.3	247,886,844	40,868,572	16.5
	특수학교	24,580,822	1.1	22,363,974	2,216,848	9.9
	소 계	814,397,983	34.9	705,213,163	109,184,820	15.5
평생교육	평생교육	6,203,581	0.3	4,801,190	1,402,391	29.2
	소 계	6,203,581	0.3	4,801,190	1,402,391	29.2
급여관리	급여관리	1,385,867,724	59.2	1,370,191,277	15,676,447	1.1
	소 계	1,385,867,724	59.2	1,370,191,277	15,676,447	1.1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639,517	0.0	635,517	4,000	0.6
	본 청	35,636,375	1.5	25,292,552	10,343,823	40.9
	지역교육청	24,362,295	1.0	13,073,977	11,288,318	86.3
	교육지원기관	25,409,625	1.1	6,162,974	19,246,651	312.3
	소 계	86,047,812	3.6	45,165,020	40,882,792	90.5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40,814,300	1.7	37,429,300	3,385,000	9.0
	예비비	6,685,600	0.3	6,685,600	0	0.0
	소 계	47,499,900	2.0	44,114,900	3,385,000	7.7
세 출 합 계		2,340,017,000	100.0	2,169,485,550	170,531,450	7.9

승인 · 동의안 : 3건

☐ 승인 · 동의안

-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관리 계획안
-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허가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및 변경 관리계획안

1. 제 안 사 유

○ 환경정책과소관

- 경북동해 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중저준의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인 경주시 일원의 자연환경 변화추이를 조사 연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 미래 전략산업인 청정에너지 개발로 ET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에너지 연구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대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연구센터 신축

○ 소방본부 소관

- 영천소방서 및 구미원평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제211회 경상북도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위치가 재선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받는 것임.

- 소방력 보강을 위한 영천소방서 및 구미원평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토 지 : 3건(16,778m²)
 - 건 물 : 3건(6,292m²)

4. 재산의 취득·처분내용

(단위 : m², 천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 정 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 계	23,070	11,278,000	
	토 지	16,778	2,978,000	
	건 물	6,292	8,300,000	
	경북동해 환경·에너지 연구센터신축 부지 매입	5,532 (2필지)	100,000	환경·에너지연구 센터 건립
	경북동해 환경·에너지 연구센터 건물 신축	2,331 (1동)	2,900,000	"
	영천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매입	9,414 (8필지)	1,700,000	소방력보강
	영천소방서 이전 신축	3,300 (1동)	4,600,000	"
	구미원평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매입	1,832 (3필지건물2동956m ²)	200,000	"
	구미원평119안전센터 이전 건물 신축	661 (1동)	800,000	"

5. 재산의 교환내용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건명	구분	교환수량(m ²)	추정액	교환대상자	용도 및 필요성

7. 붙임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10,290	2,878,000	1 3	5,532 6,292	100,000 8,300,000	3 3	15,822 6,292	2,978,000 8,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10,290	2,878,000	1 3	5,532 6,292	100,000 8,300,000	3 3	15,822 6,292	2,978,000 8,3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2 1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1 1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사용 및 대부허가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토지 건물			23,070 16,778 6,292	11,278,000 2,978,000 8,300,000			
1	전	경주시양북면안동리 633-6	1,447	40,000	2007.10	경북동해 환경에너지 연구센터신축	부지매입
2	하천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25	4,085	60,000	"	"	"
3	건물 신축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633-6외1필지	2,331	2,900,000	2008.12	"	경북동해 환경·에 너지연구 센터신축
4	답	영천시 조교동 564-1	416	57,000	2007. 6	영천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매입
5	답	영천시 조교동 566	1,005	138,000	"	"	"
6	답	영천시 조교동 565-1	3,610	805,000	"	"	"
7	답	영천시 조교동 567	1,031	144,000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8	답	영천시 조교동 568-4	856	119,000	"	"	"
9	답	영천시 조교동 566-2	1,607	224,000	"	"	"
10	답	영천시 조교동 573-2	793	190,000	"	"	"
11	답	영천시 조교동573-3	96	23,000	"	"	"
12	건물	영천시 조교동 566외 7필지	3,300	4,600,000	2008.10	"	소방서 청사신축
13	대지 건물	구미시 원평동 964-607	대지 444 건물 94.64	471,000	2007.6	구미원평119 안전센터이전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
14	대지	구미시 원평동 964-836	19	12,000	"	"	부지매입
15	대지 건물	구미시 원평 964-56	대지 413 건물861.39	530,000 165,000	"	"	부지 및 건물매입
16	건물 신축	구미시 원평동 964-56외 2필지1	661	800,000	2007.12 "	"	구미원평 119안전 센터청사 신축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참고)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변경내용	취득·변경 사유
	구분	지목	소재지	수량			
1	당초	대 (매입)	영천시 망정동 417-14 외2필지	7,472	1,700,000		영천소방서 부지 매입
		건물 (신축)	“	3,300	4,600,000		영천소방서 이전 신축
	변경	답 (매입)	영천시 조교동 566 외7필지	9,414	1,700,000	위치변경 부지매입 면적확대	• 전방위 신축출동 유리 • 당초 부지대비 1,942m² • 당초 선정부지 대비 시내와 거리3km 근접
		건물 (신축)	“	3,300	4,600,000		
2	당초	답 (매입)	구미시 도량동 451-5	1,322	1,500,000		원평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물 (신축)	“	661	800,000		원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변경	대 (매입) 건물 (매입)	구미시 원평동 964-56 외2필지	대지 876. 건물2동 956	1,178,000	위치 변경 부지매입비 절감	• 당초부지 가격인상 및 매도인 2중계약서 작 성 요구로 매입 불가 • 변경부지가 신축출동 등 입지조건 유리 • 매입비 절감 및 인접한 도유지 활용가능 • 부지매입비 322백만원 절감
		건물 (신축)	“	661	800,000		

2007년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2007년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

II.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Ⅲ. 지방채 발행 계획

- ☐ 발행계획 : 17,900백만원
-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 차입조건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연리 6.44%)
- ☐ 상환부담 : 국고
- ☐ 차입시기 : 2007년도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 시기 적의 조정

※ 지방채 발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예정액	지방채 발행 조건			비 고
		기 간	금리	상환부담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	17,900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6.44%	국고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2007. 5. 2.)
합 계	17,900				

※ 2007년 통폐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통폐합 학교수(교)	단 가	지 원 액
본교폐지	14	1,000	14,000
분교폐지	13	300	3,900
합 계	27		17,900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허가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6월 29일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연장허가 동의안

1. 제안사유

- 경상북도가 경주시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공원부지에 대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07. 6.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허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 위 치 : 경주시 천군동 130번지 등 19필지
 - 면 적 : 토지 528,600m²(160천평) - 道지분 약1/2
- 세부조서 : 붙임
 - 신 청 : 재단법인문화엑스포이사장 김관용
(2007. 5. 21. 무상사용연장허가 신청)
 - 허가기간 : 2007. 6. 23. ~ 2010. 6. 22.(3년간)

○ 무상사용연장허가의 필요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이후 4회의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되었던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와 문화산업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올해 「경주타워」와 「신라 왕경 숲」, 「엑스포문화센터」 건립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고, 향후 상시 개최의 차질 없는 진행과 엑스포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토록 연장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면제)

허가대상 공유재산 조서

[토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등 공동소유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사용면적 (㎡)	비 고
	시	동	지번			
계	19필지				528,600	
1	경주시	천군동	산30-14	목	89,107	도 1/2
2	"	"	산30-15	목	73,351	도 1/2
3	"	"	산81-1	임	9,124	도 1/2
4	"	"	103	답	301	도 1/2
5	"	"	105	임	2,972	도 1/2
6	"	"	109	임	826	도 1/2
7	"	"	115	대	34,238	도 1/2
8	"	"	116	대	10,463	도 1/2
9	"	"	121	전	29,630	도 1/2
10	"	"	130	전	121,269	건교부 5,272㎡ 도·경주 각1/2
11	"	"	140-6	전	61,603	도 1/2
12	"	"	140-4	전	6,216	도 1/2
13	"	"	698	대	6,294	도 1/2
14	"	"	750	전	62,449	도 1/2
15	"	"	760	답	5,574	도 1/2
16	"	"	762	전	7,273	도 1/2
17	"	"	128	묘	460	도 1/2
18	"	"	108	유	6,988	도 1/2
19	"	"	1595-1	도	462	도 1/2

■ 건의안 : 1건

□□ 건의안

-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의안 번호	116
----------	-----

제안 연월일 : 2007. 6. 28.

제 안 자 : 농수산위원회

1. 제안이유

- 최근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영농 자재비 인상까지 겹쳐 국내 농업경영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5월 29일과 6월 8일, 우리 경북지역 13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7,700여ha에 달하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여 피해농업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비는 복구는 커녕 어쩔 수 없이 재배를 계속해야만 하는 피해 과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인들의 생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대 국회 및 대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
-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단가 상향 및 재난지수 하향 조정
- 재해보험 품목과 대상재해 확대, 보험료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 정책자금 등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피해 농산물 구매대책 강구

3. 건의내용 : 별 첨

우박피해 지원대책 건의안

최근 WTO출범과 칠레·미국 등 농산물 수출대국과의 FTA 타결에 따라 수입 농산물은 범람하고 있으며, 유류·비료대 등 영농 재료비 인상까지 겹쳐 농업경영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산물 최대 생산지이자 과수 주산지인 우리 경북지역은 지난 5월 29일과 6월 8일 13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과수 등 농작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지역 농업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7,700여ha에 달하는 가운데, 지역 특산물인 사과와 감의 경우 도내 재배면적의 26%인 4,300여ha가 과실은 물론 잎과 가지 등 나무 전체가 타격을 입을 만큼 광범위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극심하여 금년에는 아예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정상 생육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박피해는 종전의 태풍·서리·호우 등의 피해와는 달리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며 농가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북지역 사상 최악의 농업재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1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복구는

커녕 어쩔 수 없이 재배를 계속해야만 하는 피해 과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고통을 같이 하며,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이들 농업인들의 절규를 결집하여 다음 사항들을 건의하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농가단위 재난 지수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영세농가도 피해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험대상 재해를 확대하고, 재해보험료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과 더불어 자기부담금 비율을 인하하여 보험가입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것

넷째, 상환이 도래하는 모든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에 대하여 3년 이상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할 것

다섯째, 피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대책을 강구할 것

이렇듯 이번 우박피해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는 생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지원요구이며,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우리 농업인들이 마지막 남은 영농 의욕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농업을 희생시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6. 29.

경상북도의회의원일동

기타안 : 1건

□□ 기타안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안 번호	
----------	--

제 출 일 자 : 2007. 6.

제 출 자 : 박순범의원 외 13인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시(2회)

- 2007년 8월 28일(화요일) 11 : 00
- 2007년 8월 29일(수요일) 11 : 00

2. 출석장소 : 본회의장

3. 출석대상 : 도지사, 교육감 및 『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
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4. 사 유 :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의정활동보고서

(제216회 정례회)



2007. 7. 인쇄 / 2007. 7.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